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정순기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(안 제3조)
- 3)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및 결정, 지원방법 등(안 제5조~제7조)
- 5) 지원의 중지 및 환수,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(안 제8조 및 제9조)
- 6) 지원대상자의 관리와 통지의 의무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7) 지원대상자의 관리와 통지의 의무(안 제10조 및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청권 보장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제2조 정의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료 방송 등에 관하여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

나)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(안 제3조).

- 지원대상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

1.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다)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의 협약체결 사항을 규정함

라) 지원내용, 지원신청 등(안 제5조~제7조)

- 지원 내용은 방송 기본 요금 및 장비사용료로 규정함
-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 접수하고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

마) 지원의 중지 및 환수,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(안 제8조 및 제9조)

바) 지원대상자의 관리와 통지의 의무(안 제10조 및 제11조)

3)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
5. **토론요지** : 생략

6. **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7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